

2008.11.21(금) 11:00
第132回 忠州市議會(臨時會)
第5次 本 會 議

條例案審查報告書

①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11.11	2008.11.11	2008.11.17	2008.11.17	주민지원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기요양보험료가 2008. 7. 1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변경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한 금액으로 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보험료를 2008. 7. 1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405를 부과하게 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함에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세대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약 1,300세대에 연간 7천4백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원될 예정이나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40세대 정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임.

○ 검토결과, 그동안 지원을 받아오던 일부 저소득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요양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인하여 합산한 금액이 1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고 불평불만이 팽배해 질 것이라 사료되며,

이와 아울러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분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이 약 3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아니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감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존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이 조례안대로라면 지원을 받던 분들이 일부 제외될 것인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 : 향후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은 물론,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대상자를 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검토하겠음.

5. 심사결과

가.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내역 : 조례개정에 따라 현 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안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하여”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료를”로 수정

6. 붙임

가.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하여”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료를”로 수정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u>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u> (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하여 부과한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u>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u> (이하 “보험료”라 한다) 중 <u>국민건강보험료</u> 를 -----.